

믹스페이스 대관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믹스페이스의 시설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믹스페이스와 대관자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행사, 준비, 연습, 녹음, 녹화, 촬영, 전시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행위를 위하여 당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준수하고 믹스페이스의 대관승인을 받아 믹스페이스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③ '하우스 티켓(유보석)'이라 함은 이중 예매 등 티켓판매 사고 또는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대관자가 믹스페이스에게 제공하는 공연에 대한 비매품 티켓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녹음대관, 연습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촬영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반기를 기준(상반기 : 1월-6월 / 하반기 : 7월-12월)으로 차기 기준반기 개시 전에 믹스페이스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 ③ 수시대관은 해당 반기에 믹스페이스의 자체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믹스페이스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대관 신청을 접수한다.

제4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믹스페이스 공간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믹스페이스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5조 【대관료】

-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의 물가를 고려하여 믹스페이스가 그 액수를 정한다.
- ② 수시대관일 경우,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본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 50%는 입장권 판매 전 또는 공연시작 30일 전까지 믹스페이스가 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본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 70%는 입장권 판매 전 또는 공연시작 30일 전까지 믹스페이스가 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믹스페이스는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입금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④ 공연시작 30일 이전이라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입장권 판매가 개시될 경우에는 판매시작 전까지 잔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 ⑤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되,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에 따라 공연 3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부대설비를 추가 사용할 경우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믹스페이스의 승인 즉시 납부해야 한다.

- 다.
- ⑥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수시대관 요율을 적용하며, 해당 공연 시작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⑦ 대관자가 부대설비 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믹스페이스는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료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 ⑧ 믹스페이스가 초청하는 공연 및 후원하는 공연, 기획 대관일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⑨ 7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월요일을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장은 휴관하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대점검일을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 ⑩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회 기준으로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제6조 【대관료의 환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대관료 100% 반환)
- ② 믹스페이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대관료 100% 반환)
- ③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3일전 취소한 경우 (부대설비 사용료 100% 반환)
- ④ 추가 및 심야대관 시 신청한 회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추가 및 심야대관 미사용 회수에 해당되는 대관료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제7조 【공연시간】

- ① 공연시간은 평일 19:30, 휴일 15:00, 19:00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믹스페이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 리허설 시간은 반드시 믹스페이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신청의 접수】

- ① 제4조의 시설을 일정기간 대관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 갈음한다.
- ③ 믹스페이스는 대관신청서 접수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대관 기간과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
- ④ 대관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믹스페이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대관신청기간 중에 접수한 대관신청서의 심사 승인 후 잔여 일정이 있을 경우 믹스페이스와 협의 후 대관 신청을 추가 접수할 수 있다.
- ⑥ 대관 신청시 모든 공연대관에 반드시 최소 1회의 준비대관과 청소 및 정리비(믹스페이스가 매년 물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액수)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 승인】

- ① 믹스페이스는 대관신청서 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또는 불가 공문, 기타 대관의 경우 공문 또는 유선으로 대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② 믹스페이스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대관 승인 통보서에 명시된 일정 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 승인 기준】

- ① 대관 승인 기준은 믹스페이스가 전년도까지의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한다.
- ② 믹스페이스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대관일정이 중복될 경우
 - 일반 대중음악
 - 해외 우수단체 초청공연
 - 실적 및 성실성이 우선한 단체, 신청일 기준 최근 공연실적 우선
 - 순수예술(연극, 클래식, 전통예술, 뮤지컬, 창작, 발레, 오페라 등)
 - 공기관 및 기업의 공연 또는 행사
 - 공익적 성격의 공연행사
 - 문화예술 관련 학술,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
 - ㉡ 우선순위에서도 같은 장르간 일정이 중복될 경우
 - 전문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 예술가
 - 공연 장르별로 전문성을 지향하는 단체
 - ㉢ 위의 기준에서도 일정이 중복될 경우
 - 최근 2년 이내 활동실적 순
 - 믹스페이스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체
 - ㉣ 기타의 경우에는 믹스페이스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대관 신청제한】

믹스페이스는 다음 사항에 대항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 ①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믹스페이스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과거에 믹스페이스와 계약 체결 후 대관을 취소하거나 2회 이상 작품을 변경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⑤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믹스페이스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믹스페이스의 대관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믹스페이스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공연내용 변경 금지 및 대관 취소】

- ① 대관자는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공연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 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다.
-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관자가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자가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이 없는 내용을 공연하여 공연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믹스페이스는 다음 회부터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관료 반환은 있을 수 없다.
- ④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6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14조 【대관일정 변경 금지】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가 사용일 90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믹스페이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계약금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 일의 해당년도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다.

제15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믹스페이스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믹스페이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믹스페이스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믹스페이스가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믹스페이스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믹스페이스의 사전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믹스페이스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공연장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믹스페이스의 요청시 대관자는 방염 및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장치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믹스페이스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대관자가 '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 관련 부속 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시 믹스페이스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대관자는 믹스페이스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기타 홍보물 등을 부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믹스페이스는 대관자와 협의 없이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⑥ 대관자는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대관자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에 대해 믹스페이스는 대관자에게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⑧ 대관자는 무대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무대기술직원의 통제를, 로비 및 객석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하우스매니저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⑨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연장 측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⑩ 대관자는 믹스페이스가 어떠한 제 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믹스페이스가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믹스페이스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7조 【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믹스페이스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승인 후 대관자 책임 하에 입장권 검인을 공연개시 30일전에 실시해야 한다. 단, 믹스페이스에서 발행 또는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 과정을 생략한다.
- ②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믹스페이스는 믹스페이스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믹스페이스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믹스페이스가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전에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믹스페이스로부터 잔금 납부 확인 후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믹스페이스는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입장권은 수용인원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⑤ 믹스페이스는 취학 전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들에게 환불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대관자가 책임져야 한다.
- ⑥ 대관자가 발행하는 입장권은 유료 입장권과 무료 초대권으로 구분한다. 좌석이 있는 무료 초대공연의 경우, 관람질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좌석이 지정된 무료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대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⑦ 입장권 발행은 사전에 믹스페이스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 ㉠ 공연제목
 - ㉡ 공연일시
 - ㉢ 공연장소
 - ㉣ 좌석번호 (좌석이 있을 경우)
 - ㉤ 관람연령
 - ㉥ 주최 측 전화번호
 - ㉦ 입장권 가격 (유료 공연일 경우)
- ⑧ 좌석이 있는 공연일 경우, 믹스페이스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유보하여 운영한다. 대관자는 하우스 티켓(좌석타입 8매, 스탠딩타입 10매)을 제외하고 발권하여야 하며, 하우스 티켓 사용에 관한 일체를 믹스페이스에 일임한다.
 - 하우스 티켓 좌석 타입 : 총 8매 (1층 B석 1열 중)
 - 하우스 티켓 스탠딩 타입 : 총 10매 (1층 E구역 중)
- ⑨ 정해진 휠체어석은 관객이 휠체어를 사용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석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⑩ 초대교환권
 - ㉠ 대관료 잔금 납부 후 티켓 등록 및 초대교환권 발행이 가능하다.
 - ㉡ 임의로 초대교환권을 제작/인쇄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 ㉢ 초대교환권은 교환해 줄 티켓 수량의 1.2배를 발급한다.
- ⑪ 믹스페이스는 대관자가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믹스페이스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 【방송 및 판촉 관련】

- ① 믹스페이스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믹스페이스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믹스페이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섹터(혹은 좌석)가 발생할 경우 믹스페이스는 해당 섹터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방송관련 중계 및 녹화의 경우 믹스페이스 내 녹화차량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관자는 반드시 수일 전에 믹스페이스와 협의 하에 방송중계 및 녹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믹스페이스는 대관자의 방송중계 및 녹화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③ 공연과 관련된 리셉션 및 판촉(CD 판매 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할 때는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리셉션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믹스페이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해진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⑤ 대관공연의 정보는 공연 예정일 1개월 전까지는 믹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진, 좌석등급, 티켓 가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공연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믹스페이스와 관련된 사항이 믹스페이스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LED스크린 홍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믹스페이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홍보물 제작시 믹스페이스의 공식 명칭과 BI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정양식】

대관에 관한 모든 서류는 믹스페이스의 소정 양식으로 한다.

제21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② 공연 중간의 관객 입장에 대한 사항은 스태프 회의를 통해 협의 후 결정한다.
- ③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대한 믹스페이스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하며, 객석관리와 안전, 공연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도 있다.
- ④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믹스페이스의 하우스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 ⑤ 사인회 및 기타 사진 촬영 행사의 준비는 공연 중간휴식 이후에 이루어지며 (중간휴식이 없는 경우 종료 30분 전부터 가능) 믹스페이스와 상의 하에 이루어진다.

제22조 【공연진행 협의】

- ①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개시 최소 15일 전까지 믹스페이스에서 주최하는 종합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믹스페이스 무대기술지원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작업 3일전까지는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운영스태프의 공연진행에 관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에 응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치설비는 기술 검토 후 믹스페이스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④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믹스페이스 무대감독에게 있다.

- ⑤ 믹스페이스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공연특성에 따른 장비 운용 관계로 인해 일부 좌석 및 객석공간의 사용을 대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⑥ 대관자는 공연 당일 마지막 리허설 전까지 프로그램(팸플렛, 큐시트 등) 20부와 포스터 10매를 믹스페이스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10부, 보관용 10부, 보관용 포스터 10매)
- ⑦ 대관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명단을 공연개시 7일 전까지 믹스페이스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Front/Back Stage를 구분해야 한다.
- ⑧ 공연장 내 객석과 내부벽면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첨할 경우, 믹스페이스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게첨 가능하다.

제23조 【비밀유지】

대관자는 대관계약내용 및 믹스페이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경영, 영업, 재무,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24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믹스페이스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5조 【규약변경 승인 등】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믹스페이스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믹스페이스에 서면접수하며,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믹스페이스는 규약을 추가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믹스페이스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믹스페이스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규약 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14년도 05월 20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매년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